

현대바이오랜드 공정거래 업무기준

1. 업무 기준 수립 목적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

1) 협력업체

- ①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
- ② 업체 선정 및 등록 취소
- ③ 의무 발급 서면
- ④ 보존 대상 서면
- ⑤ 계약 체결 시 기준
- ⑥ 계약 이행 시 기준
- ⑦ 지원프로그램

2) 경쟁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

3) 소비자(고객사)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

1. 목 적

공정거래
업무기준
수립 목적

현대바이오랜드 「공정거래 업무기준」은 협력업체, 경쟁업체 및 소비자(고객사) 와의 거래에 있어서 현대바이오랜드 内의 내부 구속력을 가지며,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,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,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①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

협력업체
공정거래 원칙

- 1) 협력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합니다.
- 2)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3) 협력사들 간 또는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,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습니다.
- 4)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금전, 물품, 용역 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.
- 5) 인사에 관여하거나, 설비투자, 생산량, 판매처 제한 등의 경영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.
- 6) 경영정보, 기술자료,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.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② 선정 및 등록 취소

협력업체
선정 및 등록
취소 구분

□ 용어의 정의

구 分	세 부 내 용
협력업체	현대바이오랜드의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
협력업체 Pool	현대바이오랜드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
협력업체 선정	현대바이오랜드의 협력업체 pool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

협력업체
선정 및 거래
취소 대상

구 分	세 부 내 용
협력 업체 선정	<p>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품질, 가격, 납기가 우수한 업체 - 신규 제품, 자재 등 공급이 가능한 업체 - 분사, 합병 등으로 기존 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로 설립된 업체 - 고퀄리티 상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개발 실적 및 설비 보유 업체 -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- 고객사가 직접 지정한 업체
	<p>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 가능
정당한 거래 취소	<p>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- 공급품목 단종으로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는 경우 -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- 부도, 강제집행,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한 경우 -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- 관련 법규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- 품질기준 미달, 재정(신용)상태가 불량한 경우
	<p>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취소 -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취소 -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취소 -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당사의 일방적인 미발주, 미위탁으로 취소
부당한 거래 취소	<p>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사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② 선정 및 등록 취소

협력업체 선정 Process	구 分		세 부 사 항	담당부서
구매 요청	절차	- 구매 요청		사업 추진부서
	증빙	- 구매요청서		
	주의사항	- ERP 또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격에 맞는 구매요청서 작성		
업체 모색	절차	- 통합구매팀에서 구매요청서를 기준으로 업체 모색 및 심사대상 업체 선정		통합 구매팀
	증빙	- 견적서(또는 제안서)		
	주의사항	- 경쟁입찰 원칙, 일정요건 충족시 수의계약 검토		
업체 심사	절차	- 견적 비교 및 대상업체의 재무상태, 설비수준, 근로자 인권 및 윤리경영수준 등 종합심사 - 필요시 현장 심사 실시		통합 구매팀
	증빙	- 거래처 평가 서식		
	주의사항	- 협력업체 영업비밀에 대해 사전 동의없이 수취 불가		
심사 결과 확인 & 업체 선정	절차	- 심사결과 보고 및 최종 업체 선정 후 통보		통합 구매팀
	증빙	- 제반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계좌정보, 대금지급약정서)		
	주의사항	- 미선정업체에게도 결과 통보 - 미선정업체 이의제기시 동반상승파트에 즉시 통보		
등록	절차	- 거래 개설 품의 후, 협력업체 pool 등록 [전산]		통합 구매팀
	증빙	- 품의서 및 제반 서류		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③ 의무 발급 서면

의무 대상
발급 서면

□ 하도급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서면

1. 기본계약서(추가,변경계약서 포함)

발급
시점

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체결해야 함

발급
방법

-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 해야 함
-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(전자서명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방식만 유효)이 없으면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
-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 발급 가능함 (전자메일 등)

기재
사항

1) 위탁일, 2)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3) 수량 및 단가, 4) 목적물 등을 납품·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, 5)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, 6) 양 당사자 기명날인, 7) 하도급 지급 방법·지급기일

2.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

발급
사유

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 가 서면으로 위탁 계약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여 확인 요청할 수 있고, 당사는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서면 통지해야 함

발급
시점

-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해야 함
-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

발급
방법

- 확인 요청 서면 통지와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,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(단, 전자우편은 제외)으로 함

3. 하도급 감액 서면

발급
사유

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'위탁을 할 때'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해야 함

발급
방법

-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감액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함
-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 발급 가능함(전자메일 등)

기재
사항

감액 사유와 기준,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, 감액 금액, 공제 등 감액 방법,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③ 의무 발급 서면

의무 대상
발급 서면
(계속)

4.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

발급 사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한 후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함

- 발급 방법
-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 해야 함
 -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 발급 가능함 (전자메일 등)

기재 사항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, 권리 귀속관계, 요구일, 기술자료의 대가,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

5.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(인수증)

-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,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
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

6. 검사결과 통지서

-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
-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발급 해야 함
- 단, 납품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, 검사 결과가 장시간 필요한 목적물 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검사결과 통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.

7. 계약 변경 내역 통지서

-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디자인 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서면 발급해야 함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④ 보존 대상 서면

보존 대상 서면 및 방법

보존 대상 서면
1. 기본계약서(추가·변경 계약서 포함)
2. 하도급계약 확인서면
3. 하도급 감액 서면
4.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
5.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
6. 검사결과 통지서
7.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
8.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,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
9. 하도급대금의 지급일·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이 기재된 서류
10. 선급금 및 자연이자, 어음할인료 및 자연이자, 관세 등 환급액 및 자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
11.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·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
12.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
13.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
14. 입찰명세서, 낙찰자결정품의서, 견적서, 현장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

보존 방법

-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/품의/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고 관리 대장은 부서별 자유롭게 작성
-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/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게 보존되어야 함.
-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. 여기서,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
 - 제조 위탁 : 협력업체가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
 - 하도급계약이 종료해지 또는 거래중지의 경우 : 해지 또는 중지된 날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⑤ 계약 체결 시 기준

계약 방식 선택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는 계약 체결 방식은 수의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함 - 당사는 물품의 중요도, 보유 기술력, 거래금액, 거래경험,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음 														
계약 체결시 준수 사항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text-align: center;">서면의 사전 발급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 계약서 체결 원칙, 최소한 납품 등 작업 착수 전에 기명날인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- 빈번한 거래인 경우 기본 계약서 발급, 일정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교부함 </td>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text-align: center;">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결정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 발생시 상대방에게 단가 조정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로부터 30일(30일 연장 가능) 이내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해야 함 -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함 </td>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text-align: center;">명확한 납기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기는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- 납기를 변경할 경우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-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함 </td>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text-align: center;">객관적 검사기준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함 - 단, 납품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, 검사 결과가 장시간 필요한 목적물 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검사결과 통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. - 납품물을 검사결과와 관계 없이, 즉시 수령증(입고증)을 교부해야 함 </td>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text-align: center;">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금은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장 짧은 기한으로 지급해야 함 </td>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 text-align: center;">계약해제, 해지</td><td> <p>[즉시계약 해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- 기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[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부여 후 기간 내 불이행 시 계약해지] -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 이행 지연, 제작 거부 할 경우, 품질관리 능력 부족으로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 불가능할 경우 </td>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계약 체결시 지양 사항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, 주요 항목 미기재 서면을 발급 시 미기재 사유 및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- 법정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 - 하도급 대금 결정시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,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하는 행위 -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(부당한 인사간섭, 원가 요구, 기술자료 요구, 상품이나 상품권 등 구입 강요) - 공급단가 변경에 의한 하도급 대급 조정신청이 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행위 - 부당하게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속적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-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</td></tr> </table>	서면의 사전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 계약서 체결 원칙, 최소한 납품 등 작업 착수 전에 기명날인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- 빈번한 거래인 경우 기본 계약서 발급, 일정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교부함 	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 발생시 상대방에게 단가 조정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로부터 30일(30일 연장 가능) 이내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해야 함 -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함 	명확한 납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기는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- 납기를 변경할 경우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-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함 	객관적 검사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함 - 단, 납품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, 검사 결과가 장시간 필요한 목적물 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검사결과 통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. - 납품물을 검사결과와 관계 없이, 즉시 수령증(입고증)을 교부해야 함 	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금은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장 짧은 기한으로 지급해야 함 	계약해제, 해지	<p>[즉시계약 해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- 기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[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부여 후 기간 내 불이행 시 계약해지] -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 이행 지연, 제작 거부 할 경우, 품질관리 능력 부족으로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 불가능할 경우 	계약 체결시 지양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, 주요 항목 미기재 서면을 발급 시 미기재 사유 및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- 법정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 - 하도급 대금 결정시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,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하는 행위 -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(부당한 인사간섭, 원가 요구, 기술자료 요구, 상품이나 상품권 등 구입 강요) - 공급단가 변경에 의한 하도급 대급 조정신청이 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행위 - 부당하게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속적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-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서면의 사전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 계약서 체결 원칙, 최소한 납품 등 작업 착수 전에 기명날인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- 빈번한 거래인 경우 기본 계약서 발급, 일정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교부함 														
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 발생시 상대방에게 단가 조정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로부터 30일(30일 연장 가능) 이내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해야 함 -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함 														
명확한 납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기는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- 납기를 변경할 경우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-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함 														
객관적 검사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함 - 단, 납품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, 검사 결과가 장시간 필요한 목적물 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검사결과 통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. - 납품물을 검사결과와 관계 없이, 즉시 수령증(입고증)을 교부해야 함 														
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금은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장 짧은 기한으로 지급해야 함 														
계약해제, 해지	<p>[즉시계약 해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- 기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[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부여 후 기간 내 불이행 시 계약해지] -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 이행 지연, 제작 거부 할 경우, 품질관리 능력 부족으로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 불가능할 경우 														
계약 체결시 지양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, 주요 항목 미기재 서면을 발급 시 미기재 사유 및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- 법정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 - 하도급 대금 결정시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,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하는 행위 -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(부당한 인사간섭, 원가 요구, 기술자료 요구, 상품이나 상품권 등 구입 강요) - 공급단가 변경에 의한 하도급 대급 조정신청이 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행위 - 부당하게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속적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-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														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⑥ 계약 이행 시 기준

계약 이행 시 준수 사항	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	- 신의성실의 원칙,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해야 함
	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	- 원자재 가격하락,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해야 함
	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	-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함
계약 이행 시 지양 사항	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	- 판매부진, 고객의 클레임 등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- 검사기준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-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-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	부당 반품 행위	- 경제상황의 변동, 불명확한 검사기준 적용으로 불합격 판정,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
	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	- 경제상황 변동, 경영적자,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- 당초 계약과 다르게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	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	-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	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	- 자사의 임금상승, 내부적인 품의절차 자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
	보복 조치 행위	-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
	탈법 행위	-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
	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	-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,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력업체에게 강제 판매, 이용하게 하는 행위
	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	-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

□ 상기의 공정거래 업무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법 외 공정거래
관련 법령에 따름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1) 협력업체 ⑦ 지원프로그램

목적

현대바이오랜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업체의 재무 건전화, 결재조건 개선, 기술개발 촉진,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·운영한다.

지원프로그램

금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협력업체의 생산시설·장비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(대여) 등-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·운용
인력·채용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- 채용박람회를 통한 협력업체 인력채용 지원
직·간접적 경영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술(개발) 지원 및 기술보호-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
교육훈련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협력업체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지원
협력업체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대금(또는 납품단가, 계약금액) 조정요건 또는 자체 수립 기준에 따라 매입액 조정
협력업체 상시 협의채널 및 불만처리 프로세스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통합구매팀 내 사업부문별 담당자 지정 및 채널 운영 (이메일, 전화 등)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2) 경쟁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

경쟁업체
공정거래 원칙

- 1) 경쟁사와 상호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거래한다.
- 2) 불공정한 방법(원료 고가 매입/독점, 경쟁을 위한 덤핑)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3)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수집/활용/유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.
- 4) 경쟁사와 가격, 거래조건을 담합하여 협력회사, 소비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5) 경쟁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/채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다.

2. 공정거래 업무기준 3) 소비자(고객사)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

소비자(고객사)
공정거래 원칙

- 1) 소비자(고객사)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거래한다.
- 2) 소비자(고객사)에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만 전달한다.
- 3)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(고객사)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도록 한다.
- 4)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5) 소비자(고객사)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정직하게 대응한다.